

세무회계저널
제8권 제1호 2007년 3월 pp.47~78
한국세무학회

감사품질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

김상현**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감사품질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데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는 기업의 이익조정에 관한 정보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감사품질에 따라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위해 감사품을 대용할 수 있는 측정치로 감사인 교체유무와 감사투입시간 그리고 비감사서비스 관련 다양한 변수들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비감사서비스 제공에 의한 감사인의 독립성 저하 등 감사품질과 관련된 문제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주로 경영자의 이익조정행위에 대한 측정치로서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였으나 일관된 연구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익조정 측정치로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는 대신 이익조정의 측정치로 추가적인 유용성이 확인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감사인의 교체유무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감사품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감사투입시간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비감사서비스의 제공유무, 비감사서비스 금액이나 비율의 크기 등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동일 감사인에 의한 비감사서비스의 제공으로 인해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되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주제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감사품질, 비감사서비스

* 본 논문은 2006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6-332-B00206).

본 논문의 질적 향상에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심사위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단국대학교 경영학부 조교수, kimsh@dankook.ac.kr, 02-799-1396, 주저자

논문접수일 : 2006년 12월

게재확정일 : 2007년 3월

I. 서 론

일시적차이가 포함되어 있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는 발생액 관련 측정치와 더불어 이익조정 여부를 찾아내는 유용한 측정치로 평가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는 크게 영구적차이와 일시적차이로 구분되는데 강제적 성격이 강해 경영자가 임의로 조정하기가 어려운 영구적차이와 달리 일시적차이는 현금흐름과는 관계없이 손익귀속시기나 자산·부채의 평가방법 차이에서 발생하므로 경영자의 재량권에 의한 조정이 가능하다. 즉, 경영자는 세법규정보다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하에서 더 많은 재량권을 가지게 되므로 재량적 발생액을 통해 과세소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이익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일시적차이 증가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일시적차이는 주로 경영자의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한 이익조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Mills and Newberry 2001; Phillips et al. 2003; 주인기 등 2005).

한편 높은 수준의 감사품질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통해 보고이익이 진실한 이익에서 이탈하는 크기와 가능성(magnitude and likelihood)을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감사품질이 높을수록 외부이해관계자를 대신해 경영자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기능을 가능하게 하므로 경영자의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한 이익조정행위를 보다 잘 견제하여 대리인비용을 완화시킬 수 있다.(Chow 1982; Watts and Zimmerman 1983; Beatty 1989; Defond and Jiambalvo 1994; Teoh and Wong 1993; Becker et al 1998; Francis et al 1999)

이에 본 연구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기업의 이익조정 정보가 반영되어 있으며, 감사품질이 높을수록 경영자의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한 이익조정행위를 보다 잘 견제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감사품질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즉, 감사품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면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에 대한 견제기능이 약화되어 기업의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한 이익조정이 증가하게 되며, 이는 결국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의 증가로 나타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여 감사품질이 경영자의 이익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한 연구는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재량적 발생액과 비재량적 발생액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측정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비정상항목이나 특별항목을 이용한 이익조정 행위를 발견해낼 수 없는 등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익조정 측정치로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는 대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사용함으로써 감사품질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한편 동일 감사인이 피감사기업에 비감사서비스 제공하는 경우 감사인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감사인들이 전통적인 감사업무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익이 높은 비감사서비스분야에 치중하면서 감사업무에 있어 독립성이 침해될 이해상충의 소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사베인-옥슬리 법안(Sarbanes-Oxley Act, 2002)이 제정되어 감

사인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일부 비감사서비스의 병행을 금지하도록 하였다.¹⁾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 차원에서 일부 비감사서비스와 병행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²⁾ 이와 관련하여 비감사서비스 제공에 의한 감사품질 훼손문제를 다양한 대응치를 이용하여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Frankel et al. 2002; Dee et al. 2002; Antle et al. 2002; Ruddock et al. 2002; DeFond et al. 2002; Chung and Kallapur 2003; Ashbaugh et al. 2003 등)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이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보다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계속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동일 감사인이 피감사기업에 대해 비감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감사인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문제를 선행연구와 다른 측정치를 사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추가적인 공헌점을 제공하고 있다. 즉,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비감사서비스의 제공으로 인한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문제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주로 재량적 발생액이나 감사의견 등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박종일 등 2003; 권수영 등 2004; 최종학 등 2005). 그러나 감사의견이나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측정오차 문제가 개입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측정치를 이용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량적 발생액과 더불어 이익조정 측정치로 유용성이 검증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이용함으로써 비감사서비스의 제공으로 인한 감사인의 독립성문제를 재확인하고자 한다. 만일 비감사서비스의 제공으로 인해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면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재량권을 이용한 이익조정에 대한 견제기능이 약화되고, 이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의 증가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1999년부터 2002년까지 거래소에 상장된 금융업에 속하지 않은 12월 결산법인(1,163개 기업-년)을 대상으로 감사품질이 이익조정 측정치인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감사인의 변경유무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감사품질이 낮을 것으로 기대되는 감사인의 규모

- 1) 대규모 회계부정 사건인 엔론, 월드콤 사태 등으로 인해 제정된 이 법안은 경영진 등에 대한 공시기준 및 책임규정 강화, 내부통제제도 강화, 감사위원회의 책임확대, 외부 감사인의 감독과 독립성 강화, 기업부정에 대한 처벌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외부 감사인의 독립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동 법안은 외부 감사인이 감사를 받는 기업에게 다음과 같은 특정 종류의 비감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 회계장부의 기록, 재무제표의 작성에 관한 서비스, (2) 재무정보시스템을 설계 또는 구현해 주는 서비스, (3) 기업가치를 측정, 평가하는 서비스(Valuation), (4) 보험계리(Actuarial) 서비스, (5) 기업을 위해 내부감사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 (6) 기업의 전반적인 운영 또는 인사관리 서비스, (7) 유가증권의 중개 및 거래, 투자자문 서비스, (8) 법률 서비스 및 감사와 관련이 없는 각종전문 서비스 등이다. 다만 상장회사 감사위원회의 동의를 미리 받을 경우에는 (1)내지 (8)에 규정되지 않은 세무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2) 공인회계사법 제21조에 따라 동일 감사인이 감사업무와 병행하여 제공할 수 없는 비감사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1)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2)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3)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4) 회사의 자산·자본·그 밖의 권리 등(재무제표에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도하기 위한 자산 등에 대한 실사·재무보고·가치평가 및 그 매도거래 또는 계약의 타당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업무이다.

가 작을수록 즉, BIG5 회계법인이 감사한 기업보다 NONBIG5 회계법인이 감사한 기업의 경우에는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감사품질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감사투입시간이 증가할수록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는 유의하게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회계감사시장에서 감사인 규모와 감사인이 투입한 시간에 따라 차별적 감사품질이 존재한다는 증거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비감사서비스의 제공으로 인한 감사인의 독립성문제를 검증한 결과 비감사서비스의 제공유무, 비감사서비스 금액이나 비율의 크기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비감사서비스를 세무조정 서비스와 이외의 서비스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에서도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와 유의한 영향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나라에서는 동일 감사인에 의한 비감사서비스의 제공으로 인해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되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박종일 등 2003; 권수영 등 2004; 최종학 2005 등)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하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절에서는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III절에서는 표본 및 연구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IV절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논의하고, 마지막으로 V절에서 결론을 맺는다.

II.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가설

본 연구는 감사품질이 경영자의 이익조정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러나 감사품질은 계량적으로 측정될 수 없는 질적 속성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로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다양한 감사품질 대용치를 사용하였으며, 재량적 이익조정 측정치로는 경영자의 이익조정 정보가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이용하였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크게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이익조정의 측정치로 유용하다는 사실을 검증한 선행연구와 감사품질 대용치가 경영자의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한 이익조정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 선행연구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1.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와 관련된 연구

Manzon and Plesko(2002), Mills and Newberry(2001), Philips et al.(2003), 박종일과 김경호(2002), 전규안과 박종일(2002), 주인기 등(2005) 등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내재되어 있는 정보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들 연구결과에 따르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가 경영자의 이익조정 행위에 대한 측정치로서 유용성을 가지는 것으로 요약된다.

먼저 Manzon and Plesko(2001)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는 경영자의 이익조정 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Mills and Newberry(2001)는 주식공개기업과 비공개기업에 대상으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국세청 세무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주식공개기업은 자본시장압력으로 인해 비세금비용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증가하는 보고하였다. 또한 Philips 등(2003)³⁾은 이익조정의 측정치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재량적 발생액과 더불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로 나타나는 이연법인세비용이 기업의 이익조정 행위를 찾아내는 측정치로 추가적인 유용성을 가지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익감소 회피, 적자보고 회피,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치를 달성하기 위한 이익조정 행위를 발견하는 측정치로서 이연법인세비용이 추가적인 유용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연구 중 박종일과 김경호(2002)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와 재량적 발생액, 재량적 유동발생액 사이에 유의한 양의 관계가 존재함을 보고함으로써,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경영자의 이익조정 정보가 내포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전규안과 박종일(2002)도 이연법인세정보가 경영자의 이익조정 여부를 찾아내는 유용한 측정치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재량적 발생액과 이연법인세부채 사이에는 유의한 양(+)의 관계,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와 이연법인세부채 사이에도 유의한 양(+)의 관계가 관찰되어 이익조정 측정치로서 이연법인세 정보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영진(2004)은 기업들이 손실회피 또는 이익감소회피 목적으로 일시적차이를 이용하여 과세소득에 비해 회계이익을 상대적으로 높게 보고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이익조정 여부를 확인하는 유용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주인기 등(2005)도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를 이용한 측정치가 이익조정 행위를 발견하는데 있어서 발생액을 이용한 측정치에 대해 추가적인 유용성이 있으며, 이익조정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이익조정 집단과 이익조정을 하지 않은 집단을 식별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를 이용하는 것이 발생액을 이용하는 것보다 유용하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경영자의 이익조정 정보가 내재되어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2. 감사품질과 관련된 연구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감사품질과 경영자의 이익조정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감사품질에 대해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감사품질은 계량적으로 측정될 수 없는 질적 속성이므로 선행연구에서도 감사품질의 대용치로 감사인의 규모, 감사인의 명성, 한정 의견 표명성향, 소송제

3) Phillips 등은 Mills와 Newberry(2001)의 연구처럼 이익조정의 대용치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이용하려고 했으나, 과세소득자료 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연법인세비용을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의 대용치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익조정의 측정치로 영구적차이를 포함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영구적차이는 기업의 임의적 조정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영구적차이를 포함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이용하는 경우 측정오차가 개입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 많은 선행연구들(박종일과 김경호 2002; 고종권 2003; 전규안과 박종일 2002)이 영구적차이를 차감하지 않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별도로 영구적차이를 고려하지는 않았다.

기비용, 감사인의 교체유무, 감리지적비용, 감사인의 전문성, 감사투입시간 및 감사보수 등 다양한 변수들을 사용하는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감사인 교체유무, 감사투입시간 및 비감사서비스 등을 감사품질의 대용치로 사용하였다.⁴⁾

먼저 감사인의 교체가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은 상반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Pierre and Anderson(1984), Stice(1991), Lys and Watts(1994), Geiger and Raghunandan(2002), Myers et al.(2003)의 연구는 감사인의 교체없이 감사기간이 길어질수록 내부통제제도 등 경영활동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가 높아져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감사품질이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Pierre and Anderson(1984)은 계속감사기간이 증가할수록 학습효과로 인해 감사증거의 수집과 평가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감사품질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Stice(1991)는 초도감사의 경우에는 감사인이 감사대상기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부족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포함된 위배사항을 효과적으로 발견하지 못해 감사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또한 Lys and Watts(1994)의 연구에서도 계속감사기간과 소송제기 가능성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가 관찰되었으며, Geiger and Raghunandan(2002)도 계속감사기간이 짧을 경우 도산직전년도에 계속기업가정에 대한 적절한 의견을 표명할 가능성이 낮아짐을 보고하여 계속감사기간이 짧을수록 감사품질이 낮아진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Myers et al.(2003) 역시 계속감사기간 그룹별로 발생액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여 계속감사기간이 증가할수록 감사품질이 높아진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Shockley(1981), DeFond and Subramanyam(1998), Davis et al.(2002)의 연구는 계속감사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사대상기업과의 유대관계로 증가하여 감사인이 독립성을 상실되고 공정한 감사의견의 발표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감사품질이 낮아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Shockley(1981)는 계속감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경영자와의 유대관계는 증가하고 감사대상기업의 회계시스템이나 내부통제구조에 대한 오류의 적발 가능성은 감소하게 되어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DeFond and Subramanyam(1998)도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여 감사인 교체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감사인이 교체되기 전에는 재량적 발생액이 유의한 음의 관계로 나타났으나 교체후에는 그 유의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는 감사인이 교체된 후에는 상대적으로 덜 보수적인 감사가 진행되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Davis et al.(2002)은 계속감사기간이 증가할수록 재량적 발생액의 절대값이 증가하고 이익예측오차가 감소한다는 분석결과를 통해 계속감사기간이 길어질수록 경영자의 이익조정행위에 대한 감사인의 통제력이 감소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와 같이 계속감사기간 즉, 감사인 교체여부가 우호적이든 비우호적이든 감사인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경영자의 재량적 행동에 대한 통제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4) 선행연구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감사품질의 대용치는 감사인의 형태 즉, BIG5와 NONBIG5로 구분된 감사인의 규모이다. 본 연구에서는 감사인의 형태를 통제변수로 포함시켜 기타 감사품질의 대용치 특히, 비감사서비스관련 변수들이 경영자의 이익조정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감사인의 형태에 따른 차이를 주요 연구가설로 설정하지 않고 통제변수로 포함시킨 이유는 이미 선행연구에서 이에 대한 분석이 수행되었기 때문이다.(김상현과 강주훈, 2006)

판단된다. 감사인 교체여부가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친다면 경영자의 이익증가 유인과 실현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결국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감사인 교체여부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의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 :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는 감사인의 교체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감사에 투입되는 시간이 증가할수록 피감사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수준과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확신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회계오류 등에 대한 감사증거의 수집량이 증가하게 되므로 감사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추측된다. 선행연구 역시 감사투입시간의 증가가 감사품질의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Palmrose(1986)는 감사인의 규모가 클수록 감사증거의 수집에 보다 많은 감사투입시간을 투입함으로써 보다 높은 수준의 감사품질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최관과 백원선(1998)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Big6 제휴법인이 국내법인에 비해 많은 감사시간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는 Big6 제휴법인이 보다 높은 수준의 감사품질을 제공하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이처럼 경영자의 이익조정 행위에 대해 보다 많은 감사증거를 수집할 수 있고 회계원칙의 적용이나 해석에 있어서도 충분한 감사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상황 즉, 감사에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일수록 경영자의 이익증가 유인과 실현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결국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로 나타날 것이다. 즉, 감사에 투입되는 시간이 증가할수록 상대적으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작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2 :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는 감사에 투입된 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다.

마지막으로 비감사서비스가 감사인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크게 동일 감사인에 의한 비감사서비스의 제공으로 감사인의 독립성이 저하된다는 연구, 감사인의 독립성이 증가한다는 연구와 감사인의 독립성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연구로 나누어져 일관성 있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먼저 Simunic(1984), Chai와 Jubb(2000), Frankel et al.(2002), Dee et al.(2002)의 연구는 동일 감사인에 의한 비감사서비스의 제공이 피감사기업에 대한 경제적 유대를 강화시킴으로써 피감사기업의 압력을 묵인하려는 감사인의 동기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감사품질이 낮아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Simunic(1984)은 동일감사인이 감사와 비감사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경우 피감사기업에 대한 지식이 전위되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감사인의 피감사기업에 대한 경제적 의존관계가 형성된다고 주장하였다. Chai와 Jubb(2000)은 재량적 발생액의 절대값을 이용한 분석 결과,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감사인으로부터 제공받는 비감사서비스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이익조정 유인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rankel et al.(2002)도 동일 감사인에 의한 비감사서비스의 제공으로 재량적 발생액의 절대값이 증가하며 비감사서비스의 비중이 높을수록 주식수익율과 음의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비감사서비스를 제공으로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Dee et al.(2002)의 연구에서도 비감사보수의 비중이 높을수록 재량적 발생액과 총발생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감사서비스의 비중이 높은 감사인일수록 이익조정에 대해 관대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반면 Arrunada(1999), Dopuch et al.(2001) Antle et al.(2002), Ruddock et al.(2002)의 연구는 동일 감사인에 의한 비감사서비스 제공이 회계법인의 평판자본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고 지식의 전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오히려 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향상시켜 결국 감사품질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관련하여 Arrunada(1999)은 동일 감사인이 비감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감사업무의 수행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확보하고, 감사인의 평판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으므로 감사인의 독립성과 감사품질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Dopuch et al.(2001)도 감사인이 잘못 보고할 위험확률이 낮은 경우에는 비감사서비스제공으로 인한 좋은 평판으로 인해 감사인 독립성과 감사품질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Antle et al.(2002) 역시 비감사서비스의 제공이 피감사기업의 비정상 회계발생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함으로써 동일 감사인에 의한 비감사서비스의 제공함으로써 감사품질이 향상될 수 있음을 암시해 주었다. 또한 Ruddock et al.(2002)도 보수주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론을 사용하여 비감사서비스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회계법인과 관련된 피감사기업이 더욱 더 보수적인 행동을 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한편 DeFond et al.(2002), Chung and Kallapur(2003) Ashbaugh et al.(2003)의 연구는 동일 감사인에 의해 제공되는 비감사서비스가 감사인의 독립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DeFond et al.(2002)은 비감사서비스의 비중이 계속기업에 관한 불확실성 감사의견을 표명하는 경향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비감사서비스와 감사인의 독립성 사이에 유의한 관계가 없음을 보고하였다. Chung and Kallapur(2003)도 감사인에게 있어서 피감사기업의 중요성이 비정상 발생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피감사기업의 중요성과 비정상발생액 사이에는 유의적인 관계가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Ashbaugh et al.(2003)은 비감사서비스의 제공으로 감사인의 독립성이 저해된다는 Frankel et al.(2002)의 연구를 재검토하였는데, 비감사서비스의 비중과 재량적 발생액 사이에는 유의적인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비감사서비스의 비중과 추가반응 사이에도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감사서비스와 감사인의 독립성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동일하게 이만용과 장진호(2002), 박종일 등(2003), 권수영 등(2004)의 국내연구에서도 동일 감사인에 의한 비감사서비스의 제공으로 감사인의 독립성이 저해된다는 유의한 결과가 대부분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비감사서비스의 제공으로 인해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주장이 지지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선행연구와 같이 비감사서비스의 제공이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감사인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경영자의 재량적 행동에 대한 통제기능으로 대응되는 감사품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즉, 동일 감사인의 비감사서비스 제공유무나 비중이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결과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의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3 :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는 비감사서비스 제공유무 또는 비중에 따라 차이가 있다.

III. 표본 및 연구방법

1. 표본선정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감사품질관련 자료가 본격적으로 공시되기 시작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금융업을 제외한 거래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금융업을 제외한 이유는 금융업의 경우 영업환경과 회계변수의 특성이 제조업과 다른 특징을 보일 수 있으므로 분석대상기업들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며, 12월 결산법인으로 제한한 이유는 결산시점의 차이로 인한 비교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수별로 상하위 1%에 해당하는 극단치를 제외함으로써 특이한 변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의 왜곡을 방지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재무자료는 한국신용평가정보(주)의 KIS-FAS 데이터베이스에서, 감사품질관련 자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이용하여 추출하였다. 또한 과세소득관련 자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사업보고서상 법인세등명세서에서 수집하였다.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최종표본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총 1,163개 관찰치(기업-년)이다. 연도별로는 1999년도에 262개, 2000년도에 266개, 2001년도에 295개이며 2002년도에는 340개 표본이 선정되었다.

<표 1> 표본기업 선정절차⁵⁾

항 목	표본수
1. 금융업을 제외한 12월 결산법인(1999~2002)	2,268
2. 실증분석에 필요한 재무자료, 감사관련 자료를 입수할 수 없는 기업	(1,039)
3. 회계변수 값이 상하 1%의 극단치에 해당하는 기업	(66)
최종 선정된 표본 수(기업-년)	1,163

5) 최종표본 1,163(기업-년)개 중 감사투입시간과 관련하여 분석대상에 사용된 표본은 781개(2000년~2002년)이다. 이는 1999년 자료는 모두 구체적인 투입시간이 아닌 대략적인 일수로 공시되어 있어 모두 제외하였으며, 2000년부터 2002년 기간중에도 총감사소요시간을 일수로 공시한 기업의 경우에는 계산상의 자의성을 배제하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두 제외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표본기간중 일수로 공시된 자료를 다음연도에 공시된 일수와 시간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시간단위로 변경하여 적용한 경우에도 분석결과는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한편 2001년 사업보고서에 나타난 2001년 및 2000년 감사용역관련 총소요시간 공시자료가 2002년 사업보고서에 나타난 2001년 및 2000년 총소요시간 공시자료와 상이한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장 최근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감사투입시간을 계산하였다.

2. 연구방법 및 변수정의

본 연구에서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기업의 이익조정 정보가 반영되어 있다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대용치를 이용한 감사품질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따라서 종속변수로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TDIFF : book-tax income differences)⁶⁾를 사용하였으며, 주요 독립변수로는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여러 가지 감사품질의 대용치를 사용하였다. 특히 식(1)은 감사품질의 대용치 중 감사인 교체유무 그리고 감사투입시간에 따라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모형이다. 또한 식(2)는 비감사서비스의 제공유무 및 비감사서비스의 비중에 따라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모형이다. 식(1)과 (2)에서 $ATYPE_{it}$ 의 회귀계수 a_1 의 유의성 여부가 연구가설 1~2, $BTYPE_{it}$ 의 회귀계수 b_1 의 유의성 여부가 연구가설 3에 해당한다.

<모형 1>

$$BTDIFF_{it} = a_0 + a_1 ATYPE_{it} + a_2 NONBIG5_{it} + a_3 OWN_{it} + a_4 INST_{it} + a_5 FORN_{it} \\ + a_6 OTHSH_{it} + a_7 SIZE_{it} + a_8 MTB_{it} + a_9 CAPINT_{it} + a_{10} DEBT_{it} + a_{11} CARRY_{it} \\ + \sum_k a_k YR_{kt} + \varepsilon_{it}$$

<모형 2>

$$BTDIFF_{it} = b_0 + b_1 BTYPE_{it} + b_2 NONBIG5_{it} + b_3 OWN_{it} + b_4 INST_{it} + b_5 FORN_{it} \\ + b_6 OTHSH_{it} + b_7 SIZE_{it} + b_8 MTB_{it} + b_9 CAPINT_{it} + b_{10} DEBT_{it} + b_{11} CARRY_{it} \\ + \sum_k b_k YR_{kt} + \varepsilon_{it}$$

$BTDIFF_{it}$: t년도 i기업의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ook-tax income differences)를 기초총자산으로 나눈 값,

$ATYPE_{it}$: EXCHGE_{it} = 감사인 교체유무에 대한 측정치로서 당기에 감사받은 감사인이 전기와 다른 경우에는 1, 동일한 경우에는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ATYPE_{2t}$: AUDTIME_{it} = 감사투입시간의 수준에 대한 측정치로서 감사용역관련 총소요시간을 총자산으로 나눈 비율,

$ATYPE_{3t}$: AUDTIMED_{it} = 감사투입시간의 수준에 대한 측정치로서 감사용역관련 총소요시간을 총자산으로 나누어 측정한 값이 중위수보다 작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인 더미변수,

$BTYPE_{it}$: NAS_{it} = t년도 i기업이 동일 감사인으로부터 비감사서비스를 받았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인 더미변수,

$BTYPE_{2t}$: TAX_{it} = t년도 i기업이 동일 감사인으로부터 세무조정서비스를 받았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인 더미변수,

6) 본 연구에서 사용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TDIFF)는 전규안과 박종일(2002), 박종일과 김경호(2002)에서 사용한 측정치와 동일하다. 즉, 세전이익(BI : book income)은 손익계산서상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며, 과세소득(TI : taxable income)은 사업보고서상 법인세등명세서의 과세표준을 의미한다.

$BTYP_{E_{3t}} : OTHER_{it} = t$ 년도 i 기업이 동일 감사인으로부터 세무조정 이외의 비감사서비스를 받았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인 더미변수,
 $BTYP_{E_{4t}} : LN(AFEE)_{it} = t$ 년도 i 기업으로부터 받은 감사수수료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BTYP_{E_{5t}} : LN(NAFEE)_{it} = t$ 년도 i 기업으로부터 받은 비감사수수료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BTYP_{E_{6t}} : LN(TAX)_{it} = t$ 년도 i 기업으로부터 받은 세무조정수수료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BTYP_{E_{7t}} : LN(OTHER)_{it} = t$ 년도 i 기업으로부터 받은 세무조정 외 비감사수수료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BTYP_{E_{8t}} : NAFRTO_{it} = t$ 년도 i 기업으로부터 받은 총수수료 대비 비감사수수료의 비율,
 $NONBIG5_{it}$: 감사인 규모에 대한 측정치로서 NONBIG5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1, BIG5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⁷⁾
 OWN_{it} : t 년도 i 기업의 최대주주 지분율(특수관계자 포함),⁸⁾
 $INST_{it}$: t 년도 i 기업의 기관투자자 지분율(금융기관, 증권회사, 보험회사),
 $FORN_{it}$: t 년도 i 기업의 외국인투자자 지분율,
 $OTHSH_{it}$: t 년도 i 기업의 정부와 기타법인의 지분율,
 $SIZE_{it}$: t 년도 i 기업의 기초총자산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기업규모),
 MTB_{it} : t 년도 i 기업의 기초 시장가치를 기초 총자산으로 나눈 값(성장률 : market to book ratio),
 $CAPINT_{it}$: t 년도 i 기업의 기초 유형자산을 기초총자산으로 나눈 값(자본집약도),
 $DEBT_{it}$: t 년도 i 기업의 기초 부채비율{(단기차입금 + 유동성장기차입금 + 유동성사채 + 사채 + 장기차입금 + 금융리스부채)/기초총자산},
 $CARRY_{it}$: t 년도 i 기업의 사업보고서의 법인세등명세서상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인 더미변수,
 YR : 관찰치가 연도 k 에 속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2000~2002).

기타 통제변수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감사인 규모(NONBIG5), 최대주주 지분율(OWN), 기관투자자 지분율(INST), 외국인투자자 지분율(FORN), 정부와 기타법인의 지분율(OTHSH), 자산규모(SIZE), 성장률(MTB), 자본집약도(CAPINT), 부채비율(DEBT), 이월결손금(CARRY) 및 연도별 더미변수(YR)를 추가하였다.

먼저 감사인의 규모가 클수록 경영자의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한 이익조정 행위는 감소하며, 경영자의 이익조정 측정치로 유용성이 확인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에 감사인의 규모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선행연구에 따라 감사인 규모를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Teoh and Wong 1993; Becker et al. 1998; Francis et al. 1999; 김상현과 강주훈 2006). 또한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을수록 자본시장 압력에 따른 이익조정유인이 증가하게 된다는 선행연구에 따라 최대주주 지분율, 기관투자

7) 본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BIG5 회계법인은 분석대상 기간 중 미국의 대형회계법인과 업무를 제휴하고 있는 삼일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안진회계법인(Deloitte and Touche), 삼정회계법인(KPMG), 영회회계법인(Ernst & Young), 안진회계법인(Deloitte and Touche)을 말한다. 분석대상 기간 중 2000년 이전은 삼일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산동회계법인, 영화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세동회계법인을 BIG5 회계법인으로 구분하였다.

8) 최대주주 지분율에는 사실상의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기업과 관계법인 등의 지분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자 지분율, 외국인투자자 지분율 및 정부와 기타법인의 지분율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Stein 1989; Klassen 1997). 기업규모(SIZE)는 자산총액, 매출액, 종업원수 및 기업의 시장가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많은 선행연구처럼 총자산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으로 측정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정치적 표적가능성에 따른 정치적 비용부담이 증가하게 되므로 당기의 보고이익을 줄이는 방향으로 회계처리방법을 선택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자산규모와 BTDIFF간에는 음(-)의 관계가 예상된다(Watts and Zimmerman 1986).

또한 성장률은 미래 성장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추가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기업의 성장성이 높을수록 경영자는 보고이익을 증가시킬 유인이 크므로 이익조정과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윤순석 2001; Matsumoto 2001; Frankel et al. 2002). 따라서 성장률과 BTDIFF간에는 양(+)의 관계가 예상된다. 자본집약도는 기업간 자본집약도(capital intensity)의 차이와 투자기회를 통제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는데, Mills and Newberry(2001)의 연구에서도 자본집약도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본집약도와 BTDIFF간에는 양(+)의 관계가 예상된다.

한편 부채비율과 관련해서는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부채계약을 위반할 가능성의 증가로 인해 경영자의 이익조정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와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오히려 발생액이 줄어든다는 선행연구에 따라 부채비율을 통제변수로 추가하였다(Duke and Hunt 1990; DeFond and Jambalvo 1994; DeAngelo et al. 1994). 이월결손금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경영자가 보고이익을 증가시킬 유인이 있다는 선행연구(Maydew 1997)에 따라 BTDIFF와 양(+)의 관계가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연도변수는 경기변동 상황에 따른 연도별 차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추가하였다.

IV. 실증분석

1.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먼저 패널 A에서 회계이익(BI)의 평균(중위수)은 0.063(0.051)이고 과세소득(TI)의 평균(중위수)은 0.069 (0.054)로 과세소득이 회계이익에 비해 평균 0.006만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⁹⁾ 최대주주 지분율의 평균(중위수)은 0.397(0.385)로 평균과 중위수에 큰 차이가 없다. 반면 기관투자자 지분율과 외국인투자자 지분율의 평균(중위수)은 각각 0.081(0.041)과 0.077(0.012)로 최대주주 지분율에 비해 평균값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평균과 중위수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기관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가 특정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또한 성장성 변수의 평균(중위수)은 0.582(0.418)로 1보다 작게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시장가치가

9) 전규안과 박종일(2002)의 연구에서도 거래소기업의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TDIFF)는 -0.002로 회계이익에 비해 과세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부가치보다 작음을 뜻하는 것으로 선행연구들의 기술적 통계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 자본집중도(CAPINT)의 평균(중위수)은 0.376(0.390)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자산 중 유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7.6%임을 의미한다. 감사인 규모변수(NONBIG5)의 평균은 0.328, 감사인교체 변수의 평균은 0.156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표본기업 중 약 67%가 BIG5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으며, 약 16%만이 감사인을 교체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감사관련 통계치는 선행연구의 기술적 통계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한편 패널 B는 감사서비스 및 비감사서비스 관련 보수에 대한 기술적 통계치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감사서비스와 비감사서비스를 모두 제공한 기업의 감사보수 평균(중위수)은 107,841천원(74,000천원)으로 감사서비스만 제공한 기업의 감사보수 평균(중위수) 56,036천원(46,000천원)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감사서비스와 비감사서비스를 모두 제공받은 기업의 경우 비감사서비스 보수의 평균(중위수)은 74,105천원(16,933)이며, 총보수 중 비감사서비스 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24.7%로 나타났다.

〈표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패널 A. 주요변수들의 기술적 통계치

변 수 ^a (N=1,163)	평균	중위수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
BI	0.063	0.051	- 0.141	0.279	0.066
TI	0.069	0.054	- 0.090	0.317	0.065
BTDIFF	- 0.006	- 0.006	- 0.163	0.267	0.038
OWN	0.397	0.385	0.024	0.963	0.165
INST	0.081	0.041	0.000	0.889	0.110
FORN	0.077	0.012	0.000	0.990	0.131
OTHSH	0.221	0.168	0.000	0.997	0.186
SIZE	19.321	19.085	15.901	23.070	1.308
MTB	0.582	0.418	0.073	3.409	0.501
CAPINT	0.376	0.390	0.009	0.861	0.172
DEBT	0.247	0.241	0.000	0.793	0.160
NONBIG5	0.328	0.000	0.000	1.000	0.470
EXCHGE	0.156	0.000	0.000	1.000	0.363

a 변수의 정의 및 측정 : BI = 회계이익/기초 총자산, TI = 과세소득/기초 총자산, BTDIFF =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기초 총자산, OWN = 최대주주 지분율(특수관계자 포함), INST = 기관투자자 지분율(금융기관, 증권회사, 보험회사), FORN = 외국인투자자 지분율, OTHSH = 정부와 기타법인의 지분율, SIZE = 기초 총자산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MTB = 기초시장가치/기초총자산, CAPINT = 기초 유형자산/기초 총자산, DEBT = (단기차입금+유동성장기차입금 + 유동성사채 + 사채 + 장기차입금 + 금융리스부채)/기초 총자산, CARRY =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인 더미변수, NONBIG5 = NONBIG5 회계법인이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EXCHGE = 감사인이 교체되었으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패널 B. 감사보수 및 비감사보수 관련 변수의 기술적 통계치 (단위 : 천원)

	변 수 ^a	평균	중위수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	표본수
감사서비스만 제공	AFEE	56,036	46,000	14,446	349,000	34,816	868
감사서비스와 비감사서비스를 모두 제공	AFEE	107,841	74,000	17,907	630,000	88,182	295
	NAFEE	74,105	16,933	300	1,526,000	162,095	
	FEE	181,946	92,000	21,448	1,750,000	218,345	
	NAFRTO	0.247	0.167	0.007	0.872	0.203	

a 변수의 정의 및 측정 :

AFEE = 감사수수료, NAFEE = 비감사수수료, FEE = 총수수료, NAFRTO = NAFEE/FEE.

〈표 3〉 상관관계

패널 A. 주요변수의 상관관계

변 수 ^a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BTDIFF	1.000											
(2) OWN	0.062**	1.000										
(3) INST	0.130***	0.005	1.000									
(4) FORN	0.051*	-0.040	0.094***	1.000								
(5) OTHSH	0.056*	0.245***	-0.116***	-0.062**	1.000							
(6) SIZE	0.028	-0.016	0.334***	0.299***	-0.279***	1.000						
(7) MTB	0.023	-0.114***	0.044	0.307***	-0.073**	-0.105***	1.000					
(8) CAPINT	0.067**	0.207***	0.070**	0.105***	0.193***	0.198***	-0.120***	1.000				
(9) DEBT	-0.055*	-0.098***	-0.038	0.162***	0.038	0.213***	-0.148***	0.078***	1.000			
(10) CARRY	-0.010	0.043	0.028	0.046	-0.122***	-0.128***	0.048	-0.154***	-0.229***	1.000		
(11) NONBIG5	0.057*	-0.048	-0.086***	-0.102***	-0.121***	-0.267***	-0.028	-0.038	-0.013	-0.042	1.000	
(12) EXCHGE	0.054*	0.033	0.045	-0.041	-0.039	-0.045	-0.005	0.032	0.004	-0.007	0.047	1.000

(주1)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적임을 나타냄.

a 변수의 정의 및 측정 : <표 2> 참조.

<표 3>에는 주요변수의 Pearson 상관관계를 제시하였다.¹⁰⁾ 먼저 패널 A에서 본 논문의 종속변수인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TDIFF)와 감사인 교체유무(EXCHGE), 감사인 규모(NONBIG5) 사이에는 유의한 양(+)의 관계가 관찰되었다. 이는 감사품질이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

10) 일반적으로 VIF(Variation Inflation Factor)가 10보다 크거나, 상태지수(Condition Number)가 30보다 큰 경우 변수들 사이에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VIF는 모두 1~5 사이의 값, 상태지수는 모두 10 이하의 값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이 통제되지 않았으므로 연구가설이 지지되었다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한편 패널 B에서는 감사보수 및 비감사보수 관련 변수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TDIFF)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분석결과 감사보수를 제외한 모든 비감사보수관련 변수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동일 감사인에 의한 비감사서비스의 제공이 감사인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암시해 준다.

패널 B. 감사보수 및 비감사보수 관련 변수의 상관관계

변 수 ^b	BTDIFF (ρ_{BTDIFF}) ^a	LN(AFEE) ($\rho_{LN(AFEE)}$) ^a	LN(TAX) ($\rho_{LN(TAX)}$) ^a	LN(OTHER) ($\rho_{LN(OTHER)}$) ^a	NAFRTO (ρ_{NAFRTO}) ^a
BTDIFF	1.000				
LN(AFEE)	0.151 (0.009)***	1.000			
LN(TAX)	0.037 (0.532)	-0.327 (0.000)***	1.000		
LN(OTHER)	0.009 (0.881)	0.405 (0.000)***	-0.422 (0.000)***	1.000	
NAFRTO	0.014 (0.817)	0.352 (0.000)***	-0.218 (0.000)***	0.463 (0.000)***	1.000

a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적임을 나타냄.

b 변수의 정의 및 측정 :

BTDIFF =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기초 총자산,

LN(AFEE) = 감사수수료(AFEE)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LN(TAX) = 세무조정수수료(TAX)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LN(OTHER) = 세무조정 이외의 비감사수수료(OTHER)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NAFRTO = NAFEE/FEE.

2. 주요변수의 차이 검증

<표 4>의 패널 A는 동일 감사인에 의한 비감사서비스 제공유무로 집단을 구분하는 경우 이익조정 측정치인 BTDIFF의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먼저 전체 비감사서비스의 제공유무(NAS)에 따라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각 집단별로 BTDIFF의 크기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비감사서비스를 세무조정서비스와 세무조정 이외의 비감사서비스로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분석한 경우에도 동일하였다.

패널 B는 전체기업을 감사인 규모에 따라 구분하는 경우 감사수수료와 비감사수수료 그리고 비감사서비스비중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BIG 5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집단의 감사수수료와 비감사수수료가 NONBIG5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집단보다 모두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감사수수료를 세무조정수수료와 이외 비감사수수료로 구분한 경우에도 동일하였다. 또한 비감사서비스의 비중도 BIG 5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집단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표 4〉 주요변수의 차이 검증 결과

패널 A. 비감사서비스 제공유무에 따른 각 집단별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검증

변 수 ^a	NAS=0 (N=868)	NAS=1 (N=295)	집단간 평균차이 (t-value) ^a
BTDIFF	-0.006	-0.007	0.344
변 수 ^a	OTHER=0 (N=958)	OTHER=1 (N=205)	집단간 평균차이 (t-value) ^a
BTDIFF	-0.006	-0.007	0.405
변 수 ^a	TAX=0 (N=1,020)	TAX=1 (N=143)	집단간 평균차이 (t-value) ^a
BTDIFF	-0.006	-0.006	-0.191

패널 B. 감사인 규모에 따른 각 집단별 수수료의 차이 검증

변 수 ^a	BIG5 (N=782)	NONBIG5 (N=381)	집단간 평균차이 (t-value) ^a
LN(AFEE)	11.500	10.802	8.197 ***
LN(NAFEE)	11.724	10.582	2.210 **
LN(TAX)	6.412	3.511	5.068 ***
LN(OTHER)	8.213	4.170	6.408 ***
NAFRTO	0.274	0.167	3.980 ***

a 변수의 정의 및 측정 :

NAS = 비감사서비스를 받았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인 더미변수, TAX = 세무조정서비스를 받았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인 더미변수, OTHER = 세무조정 이외의 비감사서비스를 받았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인 더미변수, 나머지 변수의 정의는 <표 2, 3> 참조.

3. 감사인 교체유무 및 감사투입시간에 따른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분석

<표 5>에서는 감사품질이 경영자의 이익조정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패널 A에는 감사품질의 대용치 중 감사인 교체유무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전임감사인의 보수주의로 인해 감사인이 교체되는 경우, 감사인이 교체된 후에는 상대적으로 덜 보수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DeFond and Subramanyam 1998). 이에 따라 모형 1과 2에서 감사인이 교체된 연도에는 경영자의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한 이익조정 행위로 인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감사인 교체유무(EXCHGE)의 회귀계수(α_1)는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

분석결과 모형 1과 2에서 감사인 교체유무(EXCHGE)의 회귀계수는 모두 0.001로 예측대로 양(+)의 부호를 보이고 있으나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사인의 교체가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이 상반되는 연구결과를 보이는 것과 논리적인 연관성이 있다(DeFond 1992; 박종성과 최기호 2001). 즉, 감사인의 교체는 대리인비용, 감사의견구매, 이익조정, 자본시장에 대한 신호전달 효과 등의 다양한 동기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감사품질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미침으로써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통제변수 중 감사인 규모(NONBIG5)의 회귀계수는 모형 2에서 0.006으로 유의한 양(+)의 값으로 나타나 감사인의 규모가 클수록 경영자의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한 이익조정 행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영자의 이익조정 측정치로 유용성이 확인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에 감사인의 규모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선행연구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감사인의 규모가 감사품질의 대용치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패널 B는 감사품질의 대용치 중 감사인이 감사업무에 투입한 시간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감사인이 감사업무에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입할수록 경영자의 이익조정 행위에 대해 보다 많은 감사증거를 수집할 수 있고 회계원칙의 적용이나 해석에 있어서도 충분한 감사노력을 기울일 수 있으므로 경영자의 이익증가 행위는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경영자의 이익조정 측정치인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작아질 수 있으므로 감사투입시간(AUDTIME)의 회귀계수(α_1)는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 모형 1에서는 감사투입시간관련 비율변수를 사용하였으며, 모형 2에서는 중위수로 구분된 더미변수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모형 1과 2에서 감사투입시간(AUDTIME)의 회귀계수는 모두 유의한 음(-)의 값으로 나타나 감사에 투입하는 시간이 증가할수록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영자의 이익조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감사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감사투입시간의 확보가 필요함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표 5〉 감사인 교체유무와 감사투입시간에 따른 회귀분석 결과

패널 A. 감사인 교체유무에 따른 회귀분석 결과

$$\begin{aligned}
 BTDIFF_{it} = & a_0 + a_1 EXCHGE_{it} + a_2 NONBIG5_{it} + a_3 OWN_{it} + a_4 INST_{it} + a_5 FORN_{it} \\
 & + a_6 OTHSH_{it} + a_7 SIZE_{it} + a_8 MTB_{it} + a_9 CAPINT_{it} + a_{10} DEBT_{it} + a_{11} CARRY_{it} \\
 & + \sum_k a_k YR_{kt} + \varepsilon_{it}
 \end{aligned}$$

변 수 ^a (N=1,163)	<모형1>	<모형2>
	추정회귀계수 (t값) ^b	추정회귀계수 (t값) ^b
EXCHGE	0.001 (0.448)	0.001 (0.463)
NONBIG5		0.006 (2.666)***
OWN	0.012 (1.716)*	0.012 (1.687)*
INST	0.047 (4.257)***	0.047 (4.237)***
FORN	0.016 (1.702)*	0.017 (1.713)*
OTHSH	0.016 (2.365)**	0.016 (2.377)**
SIZE	-0.001 (-0.714)	-0.001 (-0.705)
MTB	-0.001 (-0.297)	-0.001 (-0.296)
CAPINT	0.009 (1.339)	0.009 (1.319)
DEBT	-0.014 (-1.881)*	-0.014 (-1.872)*
CARRY	-0.002 (-0.620)	-0.002 (-0.610)
F값	5.865***	5.458***
수정 R ²	5.2%	5.1%

a 편의상 절편과 연도별 더미변수의 회귀계수는 생략하였음.

b ***, **, *는 각각 1%, 5%, 10%의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임을 의미함.

변수의 정의 및 측정 :

BTDIFF :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ook-tax income differences)를 기초총자산으로 나눈 값,

EXCHGE : 감사인 교체유무에 대한 측정치로 당기에 감사받은 감사인이 전기와 다른 경우에는 1, 동일한 경우에는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NONBIG5 : 감사인 규모에 대한 측정치로 NONBIG5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1, BIG5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나머지 변수는 <표 2> 참조

패널 B. 감사투입시간에 따른 회귀분석 결과¹¹⁾

$$\begin{aligned} BTDIFF_{it} = & a_0 + a_1 AUDTIME(D)_{it} + a_2 NONBIG5_{it} + a_3 OWN_{it} + a_4 INST_{it} \\ & + a_5 FORN_{it} + a_6 OTHSH_{it} + a_7 SIZE_{it} + a_8 MTB_{it} + a_9 CAPINT_{it} + a_{10} DEBT_{it} \\ & + a_{11} CARRY_{it} + \sum_k a_k YR_{kt} + \varepsilon_{it} \end{aligned}$$

변 수 ^a (N=781)	<모형1> 감사투입시간관련 비율변수 사용		<모형2> 감사투입시간관련 더미변수 사용	
	추정회귀계수 (t값) ^b	추정회귀계수 (t값) ^b	추정회귀계수 (t값) ^b	추정회귀계수 (t값) ^b
AUDTIME(D)	- 1.046 (-2.247)**	- 1.080 (-2.267)**	-0.006 (-2.079)**	-0.006 (-2.088)**
NONBIG5		0.001 (0.339)		0.001 (0.245)
OWN	0.010 (1.359)	0.010 (1.327)	0.011 (1.469)	0.011 (1.448)
INST	0.017 (2.395)**	0.017 (2.300)**	0.018 (2.099)**	0.018 (2.095)**
FORN	0.005 (0.528)	0.005 (0.526)	0.006 (0.607)	0.006 (0.607)
OTHSH	0.010 (2.452)**	0.010 (2.423)**	0.011 (2.509)**	0.011 (1.488)**
SIZE	-0.001 (-0.619)	-0.001 (-0.691)	-0.001 (-0.487)	-0.001 (-0.536)
MTB	0.001 (0.266)	0.001 (0.255)	0.000 (0.101)	0.000 (0.090)

11) 총자산 대신 매출액을 기준으로 감사투입시간 비율을 구하여 적용한 경우에도 분석결과는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또한 패널 A에 비해 패널 B의 표본수가 크게 감소한 이유는 각주 5)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전체표본 중 감사용역관련 구체적인 총소요시간을 공시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이다.

변 수 ^a (N=781)	<모형1> 감사투입시간관련 비율변수 사용		<모형2> 감사투입시간관련 더미변수 사용	
	추정회귀계수 (t값) ^b	추정회귀계수 (t값) ^b	추정회귀계수 (t값) ^b	추정회귀계수 (t값) ^b
CAPINT	0.007 (0.937)	0.007 (0.939)	0.007 (0.896)	0.007 (0.897)
DEBT	-0.013 (-1.722)*	-0.013 (-1.711)*	-0.014 (-1.748)*	-0.014 (-1.732)*
CARRY	-0.003 (-0.763)	-0.003 (-0.784)	-0.003 (-0.776)	-0.003 (-0.791)
F값	1.926**	1.784**	1.864**	1.723*
수정 R ²	1.4%	1.3%	1.3%	1.2%

a 편의상 절편과 연도별 더미변수의 회귀계수는 생략하였음.

b ***, **, *는 각각 1%, 5%, 10%의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임을 의미함.

변수의 정의 및 측정 :

BTDIFF :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ook-tax income differences)를 기초총자산으로 나눈 값,

<모형 1> AUDTIME : 감사투입시간의 수준에 대한 측정치로 감사서비스관련 총소요시간을 총자산으로 나눈 비율,

<모형 2> AUDTIME(D) : 감사서비스관련 총소요시간을 총자산으로 나눈 비율이 중위수보다 크면 1, 그렇지 않으면 0인 더미변수.

나머지 변수는 <표 2> 참조.

4. 비감사서비스 제공에 따른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분석

<표 6>에서는 동일 감사인에 의한 비감사서비스의 제공이 감사인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패널 A는 동일 감사인이 비감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감사인의 독립성에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모형 1은 비감사서비스 제공유무(NAS)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모형2는 비감사서비스의 유형을 세무조정(TAX)과 세무조정 이외의 비감사서비스(OTHER)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모형1과 2에서 동일 감사인에 의한 비감사서비스의 제공으로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면 경영자의 이익조정 측정치로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NAS, TAX, OTHER의 회귀계수(b_1)는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

분석결과 모형1과 2에서 NAS, TAX, OTHER의 회귀계수는 예측대로 모두 양(+)의 부호를 보이고 있으나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 감사인에 의해 제공되는 비감사서비스의 제공이 감사인의 독립성과 유의적인 관련이 없음을 의미한다.

한편 패널 B는 동일 감사인에 의한 비감사서비스의 제공금액과 비중이 증가하는 경우 감사인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모형 1은 감사수수료(LN(AFEE))와 전체 비감사수수료 금액(LN(NAFEE))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모형 2에서는 전체 비감사수수료를 세무조정수

수료(LN(TAX))와 세무조정 이외의 비감사수수료(LN(OTHER))로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모형 3에서는 비감사서비스의 비중(NAFRTO)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모형 1, 2와 3에서 동일 감사인에 의해 제공되는 비감사서비스의 금액이나 비중이 증가할수록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면 경영자의 이익조정 측정치로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LN(AFEE), LN(TAX), LN(OTHER), NAFRTO의 회귀계수(b_1)는 모두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

분석결과 모형 1, 2와 3에서 LN(AFEE), LN(TAX), LN(OTHER), NAFRTO의 회귀계수는 모두 유의한 값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동일 감사인에 의해 제공되는 비감사서비스의 크기로 인해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주장이 지지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우리나라의 경우 동일 감사인에 의해 제공되는 비감사서비스로 인해 감사인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박종일 등(2003), 권수영 등(200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표 6〉 비감사서비스 제공에 따른 회귀분석 결과

$$\begin{aligned}
 BTDIFF_{it} = & b_0 + b_1 BTYPE_{it} + b_2 NONBIG5_{it} + b_3 OWN_{it} + b_4 INST_{it} + b_5 FORN_{it} \\
 & + b_6 OTHSH_{it} + b_7 SIZE_{it} + b_8 MTB_{it} + b_9 CAPINT_{it} + b_{10} DEBT_{it} + b_{11} CARRY_{it} \\
 & + \sum_k b_k YR_{kt} + \varepsilon_{it}
 \end{aligned}$$

패널 A. 비감사서비스 제공유무에 따른 회귀분석 결과

변 수 ^a (N=1,163)	<모형1>	<모형2>
	추정회귀계수 (t값) ^b	추정회귀계수 (t값) ^b
NAS	0.000 (0.112)	
TAX		0.000 (0.078)
OTHER		0.000 (0.142)
NONBIG5	0.006 (2.687)***	0.006 (2.678)***
OWN	0.012 (1.715)*	0.012 (1.712)*
INST	0.047 (4.253)***	0.047 (4.255)***
FORN	0.016 (1.705)*	0.017 (1.706)*
OTHSH	0.016 (2.362)**	0.016 (2.362)**

변 수 ^a (N=1,163)	<모형1>	<모형2>
	추정회귀계수 (t값) ^b	추정회귀계수 (t값) ^b
SIZE	- 0.001 (-0.713)	- 0.001 (-0.720)
MTB	- 0.001 (-0.304)	- 0.001 (-0.308)
CAPINT	0.009 (1.343)	0.009 (1.346)
DEBT	- 0.014 (-1.877)*	- 0.014 (-1.875)*
CARRY	- 0.002 (-0.622)	- 0.002 (-0.618)
F값	5.443***	5.077***
수정 R ²	5.1%	5.0%

a 편의상 절편과 연도별 더미변수의 회귀계수는 생략하였음.

b ***, **, *는 각각 1%, 5%, 10%의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임을 의미함.

변수의 정의 및 측정 :

BTDIFF :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ook-tax income differences)를 기초총자산으로 나눈 값,
 BTYPE_{1t} : NAS = 동일 감사인으로부터 비감사서비스를 받았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인 더미변수,
 BTYPE_{2t} : TAX = 동일 감사인으로부터 세무조정서비스를 받았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인 더미변수,
 BTYPE_{3t} : OTHER = 동일 감사인으로부터 세무조정 이외의 비감사서비스를 받았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인 더미변수.

나머지 변수는 <표 2> 참조.

패널 B. 비감사서비스 제공금액과 비중에 따른 회귀분석 결과

변 수 ^a (N=1,163)	<모형1>	<모형2>	<모형3>
	추정회귀계수 (t값) ^b	추정회귀계수 (t값) ^b	추정회귀계수 (t값) ^b
LN(AFEE)	0.011 (1.598)	0.012 (1.587)	
LN(NAFEE)	-0.000 (-0.724)		
LN(TAX)		-0.000 (-0.057)	
LN(OTHER)		-0.001 (-1.253)	
NAFRTO			-0.006 (-0.557)

변 수 ^a (N=1,163)	<모형1>	<모형2>	<모형3>
	추정회귀계수 (t값) ^b	추정회귀계수 (t값) ^b	추정회귀계수 (t값) ^b
NONBIG5	0.010 (2.046)**	0.009 (1.821)*	0.009 (1.698)*
OWN	0.011 (0.815)	0.009 (0.704)	0.006 (0.457)
INST	0.077 (3.674)***	0.075 (3.590)***	0.079 (3.745)***
FORN	0.023 (1.405)	0.023 (1.406)	0.025 (1.553)
OTSHH	0.012 (2.486)**	0.012 (2.385)**	0.009 (2.456)**
SIZE	-0.003 (-0.967)	-0.002 (-0.721)	0.001 (0.606)
MTB	0.003 (0.821)	0.003 (0.795)	0.004 (1.011)
CAPINT	0.014 (1.078)	0.014 (1.075)	0.012 (0.944)
DEBT	-0.002 (1.903)*	-0.003 (1.916)*	-0.003 (1.907)*
CARRY	-0.010 (-1.478)	-0.009 (-1.251)	-0.009 (-1.335)
F값	2.599***	2.542***	2.601***
수정 R ²	7.5%	7.7%	7.1%

a 편의상 절편과 연도별 더미변수의 회귀계수는 생략하였음.

b ***, **, *는 각각 1%, 5%, 10%의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임을 의미함.

변수의 정의 및 측정 :

BTDIFF :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ook-tax income differences)를 기초총자산으로 나눈 값,

BTYPE_{4t} : LN(AFEE)_{it} = t년도 i기업으로부터 받은 감사수수료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BTYPE_{5t} : LN(NAFEE)_{it} = t년도 i기업으로부터 받은 비감사수수료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BTYPE_{6t} : LN(TAX)_{it} = t년도 i기업으로부터 받은 세무조정수수료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BTYPE_{7t} : LN(OTHER)_{it} = t년도 i기업으로부터 받은 세무조정 이외 비감사수수료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BTYPE_{8t} : NAFRTO_{it} = t년도 i기업으로부터 받은 총수수료 대비 비감사수수료의 비율,¹²⁾

나머지 변수는 <표 2> 참조.

12) 총보수 중 비감사서비스보수가 차지하는 비중(NAFRTO) 대신 비감사서비스보수를 감사서비스보수로 나눈 비율을 사용하여 동일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결과에는 차이가 없었다.

5. 추가분석

경영자의 이익조정 측정치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를 살펴본 선행연구 중에는 자료의 신뢰성 등을 이유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이 모두 양(+)인 기업만으로 한정하여 분석한 경우가 존재한다(박종일과 김정호 2002). 이에 따라 <표 7>에는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으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이 모두 양(+)인 기업만을 대상으로 동일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먼저 패널 A에는 감사품질의 대용치 중 감사인 교체유무를 패널 B에는 감사투입시간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영향에 대한 추가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마찬가지로 패널 A에서 감사인이 교체된 연도에는 경영자의 제량적 발생액을 이용한 이익조정 행위로 인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분석결과 모형 1과 2에서 감사인 교체유무(EXCHGE)는 유의하지 않은 양(+)의 부호가 관찰되었다. 이는 감사인의 교체유무가 이익조정 측정치로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표 5> 패널 A의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패널 B에서 감사투입시간이 증가할수록 경영자의 이익조정 행위에 대해 보다 많은 감사증거를 수집할 수 있고 회계원칙의 적용이나 해석에 있어서도 충분한 감사노력을 기울일 수 있으므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작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분석결과 모형 1과 2에서 AUDTIME의 회귀계수는 모두 유의한 음(-)의 값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사투입시간이 증가할수록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가 감소한다는 <표 5> 패널 B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패널 C에서는 동일 감사인에 의한 비감사서비스의 제공유무나 비중이 감사인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추가분석 하였다. 모형 1은 비감사서비스 제공유무, 모형 2는 비감사서비스를 세무조정과 세무조정이외의 비감사서비스로 구분하는 경우, 그리고 모형 3에서는 비감사서비스의 비중을 이용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모형 1, 2, 3에서 동일 감사인에 의해 비감사서비스가 제공되고 그 비중이 증가할수록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면 경영자의 이익조정 측정치로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분석결과 모형 1, 2, 3에서 NAS, TAX, OTHER, NAFRTO의 회귀계수는 모두 유의하지 않은 양(+)의 부호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 감사인에 의해 제공되는 비감사서비스로 인해 감사인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표 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표 7〉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이 음인 기업 모두 제외 후 회귀분석 결과

패널 A. 감사인 교체유무에 따른 회귀분석 결과

$$BTDIFF_{it} = a_0 + a_1 EXCHGE_{it} + a_2 NONBIG5_{it} + a_3 OWN_{it} + a_4 INST_{it} + a_5 FORN_{it} \\ + a_6 OTHSH_{it} + a_7 SIZE_{it} + a_8 MTB_{it} + a_9 CAPINT_{it} + a_{10} DEBT_{it} + a_{11} CARRY_{it} \\ + \sum_k a_k YR_{kt} + \varepsilon_{it}$$

변 수 ^a (N=997)	<모형1>	<모형2>
	추정회귀계수 (t값) ^b	추정회귀계수 (t값) ^b
EXCHGE	0.000 (0.128)	0.000 (0.153)
NONBIG5		0.005 (2.106)**
OWN	0.008 (1.307)	0.008 (1.289)
INST	0.029 (2.689)***	0.029 (2.678)***
FORN	0.012 (1.320)	0.012 (1.322)
OTHSH	0.010 (1.585)	0.010 (1.588)
SIZE	0.000 (0.334)	0.000 (0.338)
MTB	-0.002 (-0.743)	-0.002 (-0.742)
CAPINT	0.015 (2.446)**	0.015 (2.438)**
DEBT	-0.003 (-0.409)	-0.003 (-0.410)
CARRY	0.008 (1.888)*	0.008 (1.887)*
F값	3.030***	2.812***
수정 R ²	2.6%	2.5%

a 편의상 절편과 연도별 더미변수의 회귀계수는 생략하였음.

b ***, **, *는 각각 1%, 5%, 10%의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임을 의미함.

변수의 정의 및 측정 :

BTDIFF :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ook-tax income differences)를 기초총자산으로 나눈 값,
 EXCHGE : 감사인 교체유무에 대한 측정치로 당기에 감사받은 감사인이 전기와 다른 경우에는 1,
 동일한 경우에는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NONBIG5 : 감사인 규모에 대한 측정치로 NONBIG5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1,
 BIG5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나머지 변수는 <표 2> 참조.

패널 B. 감사투입시간에 따른 회귀분석 결과¹³⁾

$$BTDIFF_{it} = a_0 + a_1 AUDTIME_{it} + a_2 NONBIG5_{it} + a_3 OWN_{it} + a_4 INST_{it} + a_5 FORN_{it} \\ + a_6 OTHSH_{it} + a_7 SIZE_{it} + a_8 MTB_{it} + a_9 CAPINT_{it} + a_{10} DEBT_{it} + a_{11} CARRY_{it} \\ + \sum_k a_k YR_{kt} + \varepsilon_{it}$$

변 수 ^a (N=682)	<모형1>	<모형2>
	추정회귀계수 (t값) ^b	추정회귀계수 (t값) ^b
AUDTIME	- 0.881 (-1.800)*	-0.872 (-1.750)*
NONBIG5		0.000 (0.091)
OWN	0.005 (0.741)	0.005 (0.746)
INST	0.013 (1.004)	0.013 (1.003)
FORN	0.005 (0.500)	0.005 (0.503)
OTHSH	0.006 (0.783)	0.006 (0.787)
SIZE	0.000 (0.149)	0.000 (0.167)
MTB	-0.001 (-0.304)	-0.001 (-0.301)
CAPINT	0.013 (1.813)*	0.013 (1.811)*

13) 총자산 대신 매출액을 기준으로 감사투입시간 비율을 산출하여 동일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결과는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변 수 ^a (N=682)	<모형1>	<모형2>
	추정회귀계수 (t값) ^b	추정회귀계수 (t값) ^b
DEBT	-0.005 (-0.629)	-0.005 (-0.632)
CARRY	0.009 (1.831)*	0.009 (1.832)*
F값	1.994**	1.839**
수정 R ²	1.7%	1.6%

a 편의상 절편과 연도별 더미변수의 회귀계수는 생략하였음.

b ***, **, *는 각각 1%, 5%, 10%의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임을 의미함.

변수의 정의 및 측정 :

BTDIFF :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ook-tax income differences)를 기초총자산으로 나눈 값,

AUDTIME : 감사투입시간의 수준에 대한 측정치로 감사서비스관련 총소요시간을 총자산으로 나눈 비율,
나머지 변수는 <표 2> 참조

패널 C. 비감사서비스 제공유무 및 비중에 따른 회귀분석 결과

$$\begin{aligned}
 BTDIFF_{it} = & b_0 + b_1 BTYPE_{it} + b_2 NONBIG5_{it} + b_3 OWN_{it} + b_4 INST_{it} + b_5 FORN_{it} \\
 & + b_6 OTHSH_{it} + b_7 SIZE_{it} + b_8 MTB_{it} + b_9 CAPINT_{it} + b_{10} DEBT_{it} + b_{11} CARRY_{it} \\
 & + \sum_k b_k YR_{kt} + \varepsilon_{it}
 \end{aligned}$$

변 수 ^a (N=997)	<모형1>	<모형2>	<모형3>
	추정회귀계수 (t값) ^b	추정회귀계수 (t값) ^b	추정회귀계수 (t값) ^b
NAS	0.002 (0.881)		
TAX		0.002 (0.637)	
OTHER		0.001 (0.482)	
NAFRTO			0.004 (0.477)
NONBIG5	0.005 (2.100)**	0.004 (2.069)**	0.004 (2.002)**
OWN	0.009 (1.411)	0.009 (1.400)	-0.000 (-0.003)
INST	0.030 (2.743)***	0.029 (2.728)***	0.024 (2.300)**

변 수 ^a (N = 997)	<모형1>	<모형2>	<모형3>
	추정회귀계수 (t값) ^b	추정회귀계수 (t값) ^b	추정회귀계수 (t값) ^b
FORN	0.012 (1.364)	0.012 (1.360)	0.006 (0.655)
OTHSH	0.010 (1.605)	0.010 (1.600)	-0.018 (-2.247)**
SIZE	0.000 (0.042)	0.000 (0.097)	0.001 (0.785)
MTB	-0.002 (-0.795)	-0.002 (-0.801)	-0.001 (-0.521)
CAPINT	0.015 (2.494)**	0.015 (2.474)**	0.014 (2.365)**
DEBT	-0.003 (-0.379)	-0.003 (-0.388)	-0.001 (-0.165)
CARRY	0.008 (1.842)*	0.008 (1.840)*	0.008 (1.776)*
F값	2.868***	2.671***	3.005***
수정 R ²	4.6%	4.5%	4.1%

a 편의상 절편과 연도별 더미변수의 회귀계수는 생략하였음.

b ***, **, *는 각각 1%, 5%, 10%의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임을 의미함.

변수의 정의 및 측정 :

BTDIFF :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ook-tax income differences)를 기초총자산으로 나눈 값,

BTYPE_{it} : NAS = 동일 감사인으로부터 비감사서비스를 받았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인 더미변수,

BTYPE_{2t} : TAX = 동일 감사인으로부터 세무조정서비스를 받았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인 더미변수,

BTYPE_{3t} : OTHER = 동일 감사인으로부터 세무조정 이외의 비감사서비스를 받았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인 더미변수,

BTYPE_{8t} : NAFRTO_t = 동일 감사인으로부터 받은 총수수료 대비 비감사수수료의 비율,¹⁴⁾

나머지 변수는 <표 2> 참조.

V. 결 론

지금까지 경영자의 이익조정행위에 대해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이익조정의 측정치로 주로 재량적 발생액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한 연구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발생액에서 재량적 발생액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추정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비경상항목

14) 총보수 중 비감사서비스보수가 차지하는 비중(NAFRTO) 대신 비감사서비스보수를 감사서비스보수로 나눈 비율을 사용하여 동일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결과에는 차이가 없었다.

이나 특별항목을 이용한 이익조정 행위를 발견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여 감사품질, 특히 비감사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감사인의 독립성 문제를 살펴본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일관된 연구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량적 발생액에 추가하여 유용성이 확인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이익조정의 측정치로 사용함으로써 감사품질과 이익조정의 관계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이익조정의 측정치를 사용함으로써 이익조정 측정치의 불완전성에 기인할 수 있는 민감한 연구결과와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1999년부터 2002년까지 거래소에 상장된 금융업에 속하지 않은 12월 결산법인 1,163개 표본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감사품질이 이익조정 측정치인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선행연구에서 일관된 연구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감사품질의 대용치인 감사인의 변경유무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와 일관된 연구결과를 보여 주었다. 반면 감사인의 규모에 따라서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유의한 변화가 관찰되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감사품질이 낮을 것으로 기대되는 감사인의 규모가 작을수록 경영자의 이익조정 행위가 증가함을 의미하므로 감사인의 유형에 따라 차별적인 감사품질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감사에 투입되는 시간이 증가할수록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는 유의하게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회계감사시장에서 감사인이 투입하는 시간에 따라 차별적 감사품질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비감사서비스의 제공으로 인한 감사인의 독립성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비감사서비스의 제공유무, 비감사서비스 금액이나 비율의 크기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동 변수들은 일관되게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와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비감사서비스를 세무조정 서비스와 이외의 서비스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는 동일 감사인에 의한 비감사서비스의 제공으로 인해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되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보고한 많은 선행연구의 신뢰성을 재확인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참고문헌

- 권수영 · 손성규 · 이은철. 2004. “비감사서비스가 감사인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29권 제2호 : 251-280.
- 김상현 · 강주훈. 2006.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에 관한 연구 - 감사인 유형과 감사의견을 중심으로 -”. 세무와회계저널 제7권 제3호 : 273-296.
- 박종일 · 전규안 · 최종학. 2003. 비감사서비스와 감사인의 독립성에 관한 연구”. 회계학연구 제28권 제4호 : 141-176.
- 박종일 · 김경호. 2002. “세금비용과 이익조정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27권 제2호 : 81-115.
- 백원선 · 유재권. 2005. “감사인의 유형과 보수주의”. 회계와감사연구 제41호 : 241-260.
- 이만용 · 장진호. 2004. “비감사업무가 감사인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 회계와감사연구 제40호 : 1-26.
- 전규안 · 박종일. 2002. “이연법인세와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회계학연구 제27권 제1호 : 107-135.
- 정영진. 2004. “이연법인세변동액을 통한 손실회피 이익조정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주인기 · 최원욱 · 염지인. 2005. “이익조정 행위의 측정치로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회계학연구 제30권 제2호 : 237-275.
- 최 관 · 백원선. 1998. “감사인의 유형과 감사품질 :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을 중심으로”. 회계학연구 제23권 제2호 : 49-75.
- 최종학 · 박종일 · 전규안. 2005. “감사인의 피감사회사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감사인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30권 제1호 : 121-154.
- Antle, R., E. A. Gordon, G. Narayanamoorthy. and L. Zhou. 2002. The Joint Determination of Audit Fees, Non-Audit Fees, and Abnormal Accruals. *Working Paper. Yale University.*
- Arrunada, B. 1999. The Economics of Audit Quality : Private Incentives and the Regulation of Audit and Non-Audit Services. *Norwell, MA : Kluwer Academic Publishers.*
- Beatty, R. 1989. Auditor Reputation and the Pricing of Initial Public Offering. *The Accounting Review* 65 (October) : 693-709.
- Becker, C., M. DeFond, J. Jiambalvo. and K. Subramanyam. 1998. The Effect of Audit Quality on Earnings Management.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15 (Spring) : 1-24.
- Chai, S., and C. A. Jubb. 2000. Audit and Non-Audit Service Provision : Earnings Management and Audit Opinion Implications, *Working Paper. University of Melbourne.*
- Davis, L. R., B. Soo. and G. Trompeter. 2002. Auditor Tenure, Auditor Independence and Earnings Management. *Working Paper. Michigan Tech university and Boston College.*
- Dee, C., A. Lulseged. and T. Nowlin. 2002. Earnings Quality and Auditor Independence : An Examination Using Non-Audit Fee Data. *Working Paper. Florida State University.*

- Defond, M., and K. Subramanyam. 1998. Auditor Changes and Discretionary Accrual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25 (February) : 35—67.
- Frankel, R., M. Johnson. and K. Nelson. 2002. The Relation between Auditors' Fees for Non—Audit Services and Earnings Management, *The Accounting Review* 77 (Supplement) : 71—105.
- Geiger M. and K. Raghunandan. 2002. Auditor Tenure and Audit Quality.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21 (March) : 187—196.
- Krishnan, G. V. 2003. Audit Quality and the Pricing of Discretionary Accruals. *A Journal of Practice and Theory* 22 (March) : 109—126.
- Mills, L. and K. Newberry. 2001. The Influence of Tax and Nontax Costs on Book—Tax Reporting Differences : Public and Private Firms.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23 (Spring) : 1—19.
- Myers, J., L. A. Myers. and T. C. Omer. 2003. Exploring the Term of Auditor—Client Relationship and the Quality of Earnings : A Case for Mandatory Auditor Rotation? *The Accounting Review* 78 (July) : 779—799.
- Palmrose, Z. 1986. Audit Fee and Auditor Size : Further Evidence.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24 (Spring) : 97—110.
- Phillips, J., M. Pincus. and S. Rego. 2003. Earnings Management : New evidence Based on Deferred Tax Expense. *The Accounting Review* 78 (April) : 491—521.
- Pierre, K. and J. Anderson. 1984. An Analysis of Factors Associated with Lawsuits against Public Accountants. *The Accounting Review* (April) : 242—283.
- Ruddock, C., S. Taylor. and S. Taylor. 2002. Non—Audit Services and Earnings Conservatism : Is Auditor Independence Impaired? *Working Paper. University of Technology at Sydney.*
- Stein, J. 1989. Efficient Capital Markets, Inefficient Firms : A Model of Myopic Corporate Behavior.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4 (November) : 655—669.
- Teoh, S. and T. Wong. 1993. Perceived Auditor Quality and Earnings Response Coefficients. *The Accounting Review* 68 (April) : 346—367.

The Effects of Audit Quality on Book - Tax Reporting Differences*

Sanghun Kim**

—〈Abstract〉—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 of audit quality on book-tax reporting differences as measures of earnings management. Specifically, current academic study shows mixed results on whether nonaudit services provided by an auditor compromise audit quality. Prior literature shows that book-tax reporting differences contain useful information as measures of detecting earnings management. So exploring this topic by different measures of detecting earnings management is clearly an important research.

This paper investigates whether auditor change, audit services time and nonaudit services affect book-tax reporting differences as a proxy for earnings management, instead of accounting accrual. Empirical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 There is no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auditor change and book-tax reporting differences. But there is significant negative association between an amount of audit services time and book-tax reporting differences. Also there is no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book-tax reporting differences and nonaudit services provided by an auditor. These results imply that audit services time has an effect on audit quality but auditors' independence is not impaired by nonaudit services.

<Key words> book-tax reporting differences, audit quality, nonaudit service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Grant(KRF-2006-332-B00206).

** Assistant Professor, Dankook University